

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197

제출년월일 : 1993. 10. 19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改正理由

기구개편과 관련 통폐합된 직의 위원을 삭제하고 토지가격 평가 업무와 관련성(토지등급, 도시계획입안 등)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임명하여 토지평가 업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主要骨子

사하구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“세무과장”, “토지관리과장”을 “세무1과장”, “도시개발과장”으로 변경하고, 동 위원회의 간사인 “지가조사계장”을 “지정계장”으로 변경함.

3. 關聯法規
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

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3 조 제1항 1호 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세무1과장”으로 하고, “토지관리과장”을 “도시개발과장”으로 한다.

제 7 조 제2항 중 “지가조사계장”을 “지정계장”으로 하고, “토지관리과”를 “지적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 3 조(위원회 구성) ① 생략 1. 당연직위원 : 부구청장, 도시국장, <u>세무과장</u>, <u>지적과장</u>, <u>지역경제과장</u>, <u>토지관리과장</u>, <u>건설과장</u> (7명) 제 7 조(간사 등) ① 생략 ② 간사는 지가조사계장이 되며, 서기는 토지관리과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.	제 3 조(위원회 구성) ① <u>현행과 같음</u> 1. 당연직위원 : 부구청장, 도시국장, <u>세무1과장</u>, <u>지역경제과장</u>, <u>도시개발과장</u>, <u>건설과장</u>, <u>지적과장</u> (7명) 제 7 조(간사 등) ① <u>현행과 같음</u> ② 간사는 지정계장이 되며, 서기는 지적과 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.